

의안번호	2220143
의 퇴 인	임종득 의원
회 답 일	2026. 7. 29.
추 계 번 호	26E371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
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-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71조의2 (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	○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→(개정안) 2028.12.31
2	안 제71조의3 (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	○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- (적용대상)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거주자 - (기타) 동일인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본 감면, 제18조의3(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), 제30조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)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가능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1조의2 (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1조의3 (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가.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
기한 3년 연장(안 제71조의2)

□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가 예상됨

○ (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)

－ (양도소득세)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1세대 1주택 특례* 적용

*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(실질거래가액 12억 이하)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(최대 80%) 적용

－ (종합부동산세) 1주택자가 추가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, 1세대 1주택 특례** 적용

** 과세기준액 12억원 적용,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(최대 80%) 적용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크기 등을 전망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하나,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○ 그러나 향후 개별 납세자의 주택 취득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관련하여 발생할 양도차익, 종합부동산세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재함

○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해당 과세특례의 조세지출액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: 2024~2026년

	2024	2025p	2026p
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	신설	추정곤란	추정곤란

주: p는 잠정치임

자료: 대한민국부, 「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

나.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(안 제71조의3)

□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한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년에 대하여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%를 감면(연간 500만원 한도)할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인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“인구감소지역기업”이라 함)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향후 5년간 소득세의 70% 감면(연간 500만원 한도)
- 동일 과세기간에 본 감면과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(제18조의3)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(제30조)이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
 - (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) 국내에 복귀한 우수인력 내국인에 대하여 10년간 근로소득세 50% 감면 (2024년 조세지출 실적 24억원)
 - (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)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·60세 이상인 사람·장애인, 경력단절 근로자에게 취업 후 3년(청년 5년)간 근로소득세 70% 감면(청년 90%), 연간 감면 한도 200만원 (2024년 조세지출 실적 1조 1,384억원)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별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및 해당 기업 청년 취업자 수, 이 중 중소기업 취업자 수, 기존 감면제도 적용자 수 및 선택 변경 가능 인원, 해당 인원의 근로소득 및 산출세액 분포 자료가 필요함

□ 그러나 과세기간별 인구감소지역 청년 취업자 중 ‘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’을 제외한 순수 적용 대상 인원과 이들의 소득세 산출세액 자료가 부재하며,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 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인원과 이 중 기존 감면제도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순수 대상 인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,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음
 -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지역별 취업자 수는 특정 시점의 재직 상태를 나타내는 저량

- (Stock) 통계로, 전기 대비 증감 수치에는 노동시장 진입자와 이탈자가 혼재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 신규 취업자 수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움
- 아울러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청년과 인구감소지역기업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 제도의 정확한 적용대상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기존 감면제도와 선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부재
 - 본 개정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감면 기간, 감면율 및 감면 한도에 차이가 있어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, 실제 선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 부재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